■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7. 18.>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 호		등록번호	
	대 표 자	(한글) (한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폐업연월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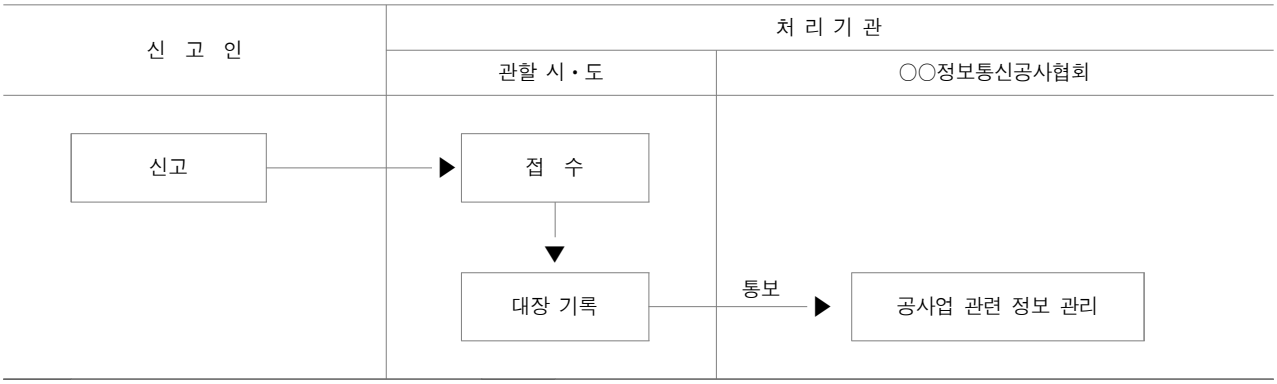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